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9. 1.(월) 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8. 0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8. 08.

라. 상정일자 : 2014. 09. 01.(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)

O 제안설명: 조동암 안전행정국장

O 검토보고: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

O 질의 및 토론

O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O 수입증지 환매금지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
- 개정이후('01. 6. 18.) 오랜 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,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「인천광역시수입증 지조례」에서「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」로 띄어 씀.

- O 수입증지의 발행 방법,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, 종류, 인수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- O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)
- O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, 증지진위 조사, 증지의 소인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)
- O 수입증지의 환매, 교환, 출납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)
- O 기타 조례 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「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」의 불합리 한 조항을 개선하고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현행 「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」 제26조(증지의 환매) 조항에서 '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'에만 제한적으로 증지 를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
- ○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위 조항이 '증지 판매인'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며,
- 수입증지를 구입한 국민이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증지의 환매를 요구할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어 환매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음.

○ 안 제3조(수수료의 징수)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수수료 납부 수 단을 증지 및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종이증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2012년 3월부터 인증기를 도입하 고 2013년 8월부터는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,

[인증기 및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현황]

- O 인증기 보급

 - 보급일자 : 2012. 3. 8.
- O 신용카드단말기 보급
 - 보급기관 및 대수(총 14대)
 - ⇒ 세정과, 시민봉사과, 교통관리과, 보건환경연구원, 종합건설본부, 서부공원사업소 각1대, 소방안전본부(소방서) 8대
 - 보급시기 : 2013. 8월, 2014. 4월(서부공원사업소 추가 보급)
- 안 제4조(증지의 발행)은 증지의 발행 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인천광역시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2011년 2월에 증지를 조제·인수한 이후 추가 발행은 없었으며 현재 241만 9,265매, 2억 8,527만 4천원 규모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.
- O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증지 판매인의 계약방법 및 의무, 변상 책임과 판매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판매는 인천광역시청직원복지회가 맡고 있음.
- 안 제18조(증지의 환매) 조항에서는 환매 대상 증지를 '사용하고 남은 증지'로 규정하여 환매 대상 증지의 제한을 없앴으며 안 제 19조(증지의 교환) 조항에서도 현행 조례에서 오염, 훼손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 조항을 명시 하고 있는 바,

- O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환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환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였음.
 - 그 밖에는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〈 이영훈 위원 〉

- O 지금 증지 사용 현황은?
 - → 현재, 계기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, 종이 증지는 향후 단계 적으로 폐지할 예정 임.
- O 언제까지 사용하게 될 것인지?
 - → 수수료 금액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잔여수량을 보면 최소 1년내지 2년은 더 사용해야 할 듯 함.

〈 유일용 위원 〉

O 언제나 환매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, 판매인, 시민 등 손해 받지 않도록 한 합리적인 사항으로 판단됨.

〈 차준택 위원 〉

- O 제3조 내용중 신용카드 등은 직불카드도 포함되는가?
 - → 포함되는 사항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차준택, 유일용, 허 준, 신영은, 이영훈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O 원안가결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- 7. 소수의견 요지
 - O 없음
- 8. 기타 사항
 - O 특이사항 없음
- □ 붙임 :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·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수입증지(이하 "증지"라 한다)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.
- 제3조(수수료의 징수)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내게 할수 있다.
- 제4조(증지의 발행) ① 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.
 - ②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)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

- 지 요금계기(이하 "계기"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,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.
- 1. 증지 요금
- 2. 발행기관명
- 3. 발행연월일
- 4. 계기 고유번호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, 40원권, 500원권, 60원권, 100원권, 200원권, 300원권, 400원권, 500원권, 700원권, 1,000원권, 2,000원권, 5,000원권, 10,000원권으로 한다.
 -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.7센티미터, 세로 3.0센티미터로 하고, 모양은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. 다만, 제5조에 따라 계기로 발행하는 증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7조(증지인수 및 보관) ① 제4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원(이하 "출납원"이라 한다)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.
 - ② 인수한 증지는 인천광역시금고(이하 "시금고"라 한다)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.
- 제8조(증지판매인) 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(이하 "판매이"이라 한다)이 판매한다.

- 제9조(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)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계약신청내용확인표에 따라 그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,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.
 - ③ 시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판매인의 의무)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증지의 정가 판매할 것
 - 2. 민원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증지의 비치할 것
 - 3. 판매인의 성명 및 주소,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할 것
 - 4. 판매인이 증지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예정 5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해지신고서 제출할 것
- 제11조(증지취급 및 매수)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 - ③ 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수입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증지 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증지수령증을 받고 교부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변상책임) 판매인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하여 증지를 환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- 제13조(판매인 수수료)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 분의 5로 하고, 시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. 다 만.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14조(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) ①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고,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 - 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일일결산시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증지진위 조사)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증지의 소인) ① 증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 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.
- 제17조(증지의 무효)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.

- 제18조(증지의 환매) ①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판매인이 제1항에 따른 환매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한다.
 - ③ 시장은 제2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증지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.
 - ④ 시금고에서는 제3항의 수입증지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13조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증지의 교환) ① 판매인은 보유중인 증지가 오염,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.
- 제20조(출납정리) 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.
- 제21조(보고) ① 시금고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
 -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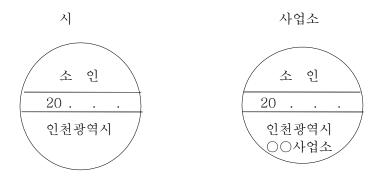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

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소 인 규 격 (지름 2.5센티미터)



[별지 제1호서식]

		수입증지판매인	계약체결신청서	
리네시	성 명		생년월일	
판매인	주 소		(전호	}:)
	개 소 장소			
〈판매소의	序之〉			
			려, 인천광역시 수입증지]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 년	
			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인 천 3	광 역 시 경) 귀하		
구비	서류	신청인의 주민등록증서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수 수 료
, ,	, .,		, = = 0	없 음

[별지 제2호서식]

수입증지판매계약신청내용확인표

1. 신청내용

판 매 인	성 명		생년월일	
긴 베 긴	주 소	(전화:)
판 매 소 설치장소				

2. 확인사항

항 목		확인결과
가. 최근1년내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사실이 있는지 여부		흥() 음()
나.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	- `	정() 적정()
다. 판매소 설치장소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여부		정() 적정()
라. 판매소 설치장소의 주변환경	상 도:	택가() 가() 로변() 타()
마. 판매소 설치장소의 신청인 소유형태		유() 차() 타()
바 기타 참고사항	·	

확인자

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3호서식]

1 1	
ЖI	0
· 'II	

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서

주 소: 성 명:

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계약 체결함

- 1. 수입증지판매소 위치 :
- 2. 직 업:

년 월 일

인천광역시장

[별지 제4호서식]

수입증지판매해지신고서

	계약번호	제	Š	계약년월일	년	월	일
판	소 재 지						
매	성 명			생년월일			
인	사유발생일						
신	고 사 항						

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자 주 소 성 명 (서명 또는 인)

인 천 광 역 시 장 귀 하

[별지 제5호서식]

수입증지매수(출납·보관·교환·환매)청구서

구 분	재 그	고 량	청구(교환	·, 환매)량	공제액	=1-11-1	
권종	매수	금액	매수	금액	(청구액의 5/100)	현금납부 (지불)액	비 고 (사유)
계							
10원							
40원							
50원							
60원							
100원							
200원							
300원							
400원							
500원							
700원							
1,000원							
2,000원							
5,000원							
10,000원							

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(교환, 환매)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귀 하

[별지 제6호서식]

수입증지불출(교환·환매)증

No. 수입증지	지급(교환·횐	-매)원부	절	수입증지	지급(교환•환	환매)원부
관리인	주 소 성 명			판매인주소 성명		
액 면 권	매 수	금 액	취	액 면 권	매 수	금 액
10,000원	미	원		10,000원	미	원
5,000원	매	원		5,000원	마	원
2,000원	매	원		2,000원	마	원
1000원	매	원		1000원	마	원
700원	매	원	선	700원	매	원
500원	대	원		500원	미	원
400원	대	원		400원	미	원
300원	대	원		300원	미	원
200원	대	원		200원	매	원
100원	머	원		100원	미	원
60원	대	원		60원	미	원
50원	마	원		50원	마	원
40원	마	원		40원	미	원
10원	마	원		10원	마	원
할인금액				할인금액		
차인금액				차인금액		
발 행 년 월 일				지급(교환·환1	수입금출납원	

[별지 제7호서식]

수입증지 수령증

구분 종류	수 량	금 액	적 요
계	미	원	
10원	미	원	
40원	미	원	
50원	미	원	
60원	미	원	
100원	미	원	
200원	미	원	
300원	미	원	
400원	미	원	
500원	미	원	
700원	미	원	
1,000원	미	원	
2,000원	매	원	
5,000원	미	원	
10,000원	미	원	

위 수입증지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

년 월 일

○ ○ 수입금출납원

직 성명 (인)

인천광역시금고 귀 하

수입증지 요금계기(인증기) 관리대장

(단위:매,원)

일자	계기 고유	전일 까지 누계 금액 (A)	발청	행(B)	결(분(C)		-입 B-C)	금일 까지 누계 금액 (E=A+D)		결 재	
린/	번호	금액 (A)	매수	금액	매수	금액	매수	금액	금액 (E=A+D)	담당자	담당	과장

[별지 제9호서식]

수입증지판매대장

구분						마				Ò]						Ω.	<u>}</u>	ī	1)	
권종 (원) 일자	계	10	40	50	60	100	200	300	400	500	700	1,000	2,000	5,000	10,000	계	10	40	50	60	100

구분			판		매									잔				고					
권종 (원) 200 일자	300	400	500	700	1,000	2,000	5,000	10,000	계	10	40	50	60	100	200	300	400	500	700	1,000	2,000	5,000	10,000